고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582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 10. 11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1999. 10. 12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1999. 10. 25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 의결

2. 폐지이유

○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 위임사무로서 경상남도 농지개량계관리조례(1998. 3. 12 조례 제2555호)가 제정 운영되고 있어 고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고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는 1972. 2. 15 조례 제209호로 제정 공포되어 6차례의 개정을 시행하여 왔으나 폐지이유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위임 사무로서 경상남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 (1998. 3. 12 조례 제2555호)가 제정 운영되고 있어 고성군농지개량조합 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를 폐지함은 타당한 것이라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없음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1999. 10. 2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